

##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· 대구사이버대학교

### 사회적 경제 관련 산학협력 지원사업 협약서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구사이버대학교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.)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,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 당사자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하여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협력 분야)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- 사회적 경제(사회적기업,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등) 사업에 대한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진의 사업 PM, 컨설팅업무 참여 및 산학협력 전담 직원 지원을 통한 Co-operation 행정시스템 구축
- 기획재정부, 고용노동부, 경상북도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학협력 사업 공동 수행
- 사회적 경제 분야에 대한 대구대학교 및 대구사이버대학교 상호 공동연구
- 사회적 경제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재·물적 지원의 교류
- 교육, 시설, 시스템 공유 및 정보자료의 상호 이용 및 협력

제3조(제부사항)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업무 협력 분야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협·제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4조(양도금지) 양 기관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협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제5조(비밀유지) 양 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이나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6조(협의조정)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협약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조(효력발생 및 협력기간)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고, 종료일 3개월 이전에 해약 서면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.

제8조(기타)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쌍방 협의에 따른다.

양 기관은 본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날인하고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5. 9. 7

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



대구사이버대학교



총장 흥덕

단장 이덕

